

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

연금계좌 취급자	① 법인명(상호)		② 대표자(성명)	
	③ 사업자등록번호		④ 소재지(주소)	
연금계좌 가입자	⑤ 성명		⑥ 주민등록번호	
	⑦ 계좌유형		⑧ 계좌번호	

이연퇴직소득 입금 및 인출 내역

작성 기준일		년 월 일				작성 담당자 (연락처)				()					
⑨ 입금 회차	⑩ 입금 일	⑪ 근무처 상호	⑫ 근무처 사업자 번호	⑬ 소득이 연퇴직 소득 (전환분) 여부	입금 및 전환내역				인출내역				⑳ 잔액	㉑ 원천 징수 세액	
					⑭ 입금 금액	⑮ 입금 금액에 대한 세액	⑯ 전환 금액	⑰ 전환 금액에 대한 세액	⑱ 2014년 12월31일 이전 인출여부	㉒ 인출 금액	㉓ 인출 금액에 대한 세액	㉔ 인출 금액에 대한 세액			
합계															

위와 같이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연금계좌취급자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이 명세서에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입금·인출 내역을 작성합니다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).
2. ⑦ 계좌유형란: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⑪ 근무처상호란: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지급한 근무처를 적습니다.
4. ⑬ 소득이연퇴직소득(전환분)여부란: 「소득세법」 제146조의2의 소득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"O" 표시합니다.
5. ⑭ 입금금액란: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적습니다. 연금계좌의 이전으로 이체받기 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최초 입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.
6. ⑮ 입금금액에 대한 세액란: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. 소득이연퇴직소득이나 입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.
7. ⑯ 전환금액란: 「소득세법」 제146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적습니다. 세액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
8. ⑰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란: 2014년 12월 31일에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때의 세액을 적습니다.
9. 인출내역란: 입금회차 1건에 대해 인출건별로 ⑱인출금액과 ⑳인출금액에 대한 세액란을 작성하며, 인출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출건 합산액과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출건 합산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합산액에 대해 인출금액과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작성합니다.
10. ㉒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출여부란: 소득이연퇴직소득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출된 경우 "O" 표시합니다.
11. ㉓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란: 인출 당시 인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세액을 작성합니다.
12. ㉔ 잔액란: 작성기준일 현재 이연퇴직소득 잔액을 작성합니다.
13. ㉕ 원천징수세액란: ㉓인출금액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 가정할 때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.
14.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 명세서를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공해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.
15. 본 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